

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교육청

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129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14. 4. 8.

제 출 자 : 인천광역시교육감

1. 개정이유

- 가. 교육위원회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두는 근거 규정인 『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』 제17조의 유효기간이 2014. 6.30.자로 만료됨에 따라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대한 근거를 변경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내 교육에 관한 사무 처리를 지원하고자 하며,
- 나. 교육부에서 총액인건비 기준인원이 확정 통보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증원하고,
- 다. 『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』 개정으로 하급교육행정기관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.

2. 개정근거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90조(사무처 등의 설치) 및 제91조(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)
- 나.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4조(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)
- 다. 2014년 시·도교육청 총액인건비 확정 산정 통보
(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-1300, 2014.03.07.호)

3. 주요내용

- 가.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내 교육위원회 지원조직에 두는 정원에 대한 관련 근거를 변경(안 제2조)
- 나.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총인원 변경(안 제2조)
 -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: 3,270명→3,276명(6명 증원)

- 본청, 교육지원청, 직속기관,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 : 3,075명→3,081명(6명 증원)
- 다. “지역교육청”을 “교육지원청”으로 변경(안 제2조, 별표3, 별표4)

4. 일부개정조례안 : 붙임

5. 신·구 조문 대비표 : 붙임

6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
- 나. 입법예고 : 생략
- 다. 교육규제 : 신설·강화규제 해당없음
- 라. 부패영향평가 결과 : 평가제외
- 마.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평가제외

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

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3,270명”을 “3,276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 제90조 및 제91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본청, 교육지원청, 직속기관,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(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) : 3,081명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표 4의 기관명란 중 “지역교육청”을 “교육지원청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3]

단위기관별·직급별 정원(제4조제1항 관련)

직급별 \ 기관별	총계	시의회 사무처	본청 (직속기관 포함)	교육지원청	공립의 각급학교
총계	3,276				
정무직 소계	1				
교육감	1		1		
일반직 소계	3,087				
3급	7		7		
4급	26	1	21	4	
5급 이하	3,047				
전문경력관	7				
연구직 소계	2				
연구사	2				
특정직 소계	186				
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·교육연구관	27		18	9	
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 학 관·교 육 연 구 관 및 장학사·교육연구사	159			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2조(정원의 총수)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<u>3,270명</u>으로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 17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의 회 사무처 정원 : 9명</p> <p>2. 본청, <u>지역교육청</u>, 직속기관, <u>지역교육청</u>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 급 학교 정원(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) : <u>3,075명</u></p> <p>3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 ----- ----- <u>3,276명</u> ----- -----.</p> <p>1. 「지방자치법」 제90조 및 제91조 ----- ----- : --</p> <p>2. -----, <u>교육지원청</u>, -----, <u>교육지원청</u> ----- ----- : <u>3,081명</u>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[별표 3]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단위기관별·직급별 정원(제4조제1항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직급별 \ 기관별</th> <th>총계</th> <th>시의회 사무처</th> <th>본청 (직속기 관포함)</th> <th>지역교육 청</th> <th>공립의 각급학교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총계</td> <td>3,270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정무직 소계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교육감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일반직 소계</td> <td>3,08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3급</td> <td>7</td> <td></td> <td>7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4급</td> <td>26</td> <td>1</td> <td>21</td> <td>4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5급 이하</td> <td>3,04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전문경력관</td> <td>7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연구직 소계</td> <td>2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연구사</td> <td>2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특정직 소계</td> <td>186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·교육연구관</td> <td>27</td> <td></td> <td>18</td> <td>9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·교육연구관 및 장학사·교육연구사</td> <td>159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직급별 \ 기관별	총계	시의회 사무처	본청 (직속기 관포함)	지역교육 청	공립의 각급학교	총계	3,270					정무직 소계	1					교육감	1		1			일반직 소계	3,081					3급	7		7			4급	26	1	21	4		5급 이하	3,041					전문경력관	7					연구직 소계	2					연구사	2					특정직 소계	186					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·교육연구관	27		18	9		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·교육연구관 및 장학사·교육연구사	159					<p>[별표 3]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단위기관별·직급별 정원(제4조제1항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직급별 \ 기관별</th> <th>총계</th> <th>시의회 사무처</th> <th>본청 (직속기 관포함)</th> <th>교육지원 청</th> <th>공립의 각급학교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총계</td> <td>3,276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정무직 소계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교육감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일반직 소계</td> <td>3,087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3급</td> <td>7</td> <td></td> <td>7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4급</td> <td>26</td> <td>1</td> <td>21</td> <td>4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5급 이하</td> <td>3,047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전문경력관</td> <td>7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연구직 소계</td> <td>2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연구사</td> <td>2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특정직 소계</td> <td>186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·교육연구관</td> <td>27</td> <td></td> <td>18</td> <td>9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·교육연구관 및 장학사·교육연구사</td> <td>159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직급별 \ 기관별	총계	시의회 사무처	본청 (직속기 관포함)	교육지원 청	공립의 각급학교	총계	3,276					정무직 소계	1					교육감	1		1			일반직 소계	3,087					3급	7		7			4급	26	1	21	4		5급 이하	3,047					전문경력관	7					연구직 소계	2					연구사	2					특정직 소계	186					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·교육연구관	27		18	9		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·교육연구관 및 장학사·교육연구사	159				
직급별 \ 기관별	총계	시의회 사무처	본청 (직속기 관포함)	지역교육 청	공립의 각급학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총계	3,27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정무직 소계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교육감	1	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직 소계	3,08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급	7		7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급	26	1	21	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급 이하	3,04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문경력관	7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직 소계	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사	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특정직 소계	186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·교육연구관	27		18	9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·교육연구관 및 장학사·교육연구사	159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직급별 \ 기관별	총계	시의회 사무처	본청 (직속기 관포함)	교육지원 청	공립의 각급학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총계	3,276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정무직 소계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교육감	1	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직 소계	3,087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급	7		7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급	26	1	21	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급 이하	3,047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문경력관	7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직 소계	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사	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특정직 소계	186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·교육연구관	27		18	9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·교육연구관 및 장학사·교육연구사	159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현 행					개 정 안				
[별표 4] 한시정원(제4조제2항 관련)					[별표 4] 한시정원(제4조제2항 관련)				
기관명	직종	직급	정원	존속기한	기관명	직종	직급	정원	존속기한
총 계			4		총 계			4	
지역교육청 (Wee센터)	일반직	5급 이하	4	2016. 3.31	교육지원청 (Wee센터)	일반직	5급 이하	4	2016. 3.31

관련법령 및 참고자료 발췌사항

<p>관계법령 및 참고자료</p>	<p>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</p> <p>제17조(교육위원회 사무에 대한 지원) ① 교육위원회 및 시·도의회 의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의회 사무처에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둔다.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.</p> <p>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추천 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한다.</p> <p>[법률 제10046호(2010.2.26)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]</p> <p>제34조(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) ① 시·도의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·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둔다.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 <p>□ 지방자치법</p> <p>제90조(사무처 등의 설치) ① 시·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,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과 직원을 둔다.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 <p>제91조(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)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.</p> <p>②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임명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·사무 국장·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별정직공무원 2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3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
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<p>관계법령 및 참고자료</p>	<p>□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</p> <p>제15조(정원의 관리) ① 교육감은 조직 간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·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</p> <p>□ 2014년 시·도교육청 총액인건비 확정 산정 통보 [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-1300 (2014.03.07.)호]</p> <div style="border: 1px dotted black; padding: 5px;"> <p>나. 추가 행정수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병설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을 위한 행정업무 경감 인력 반영 : 지방공무원(일반직) 6명 - 시도별 자체 이행노력 여부에 따라 차년도 총액인건비 산정시 차등 반영 </div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